

전략물자 자율준수제도의 무역에 대한 효과 분석*

김 현 지**

-
- I. 서 론
 - II. 자율준수무역거래자제도의 도입 배경 및 선행연구
 - III. 전략물자 자율준수제도의 현황
 - IV. 전략물자 자율준수제도의 무역에 대한 효과 분석
 - V. 결 론
-

주제어 : 전략물자, 자율준수제도, 수출허가, 자율준수무역거래자

I. 서 론

전략물자 또는 이중용도 물품의 교역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상품무역과는 달리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대량파괴무기(WMD) 확산과 관련하여 잠재적으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국제적으로 전략물자의 수출입 및 기술이전에 대해 제한을 가하고 있다. 특히,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주도하에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 체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무역질서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관리는 국제무역을 영위하는 기업이 지켜야 하는 국제적 약속이다.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지향해 옴으로써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관리 제도를 부정적인 견해로 무역의 장애요소로 인식하여 수출관리의 이행효과가 미비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경기대학교 교내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된 것임.

**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E-Mail : jhyunk@kgu.ac.kr

한 실정이다. 국가적 측면에서 대량파괴무기의 비확산을 통하여 국가안보와 산업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전략물자의 효과적인 수출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체제하에서 국제사회의 평화적 유지에 기여하는 전략물자에 대한 기업의 자율준수와 관리능력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다. 기업들이 스스로 적극적인 관심과 능동적인 자세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각 국은 자율준수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업 스스로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를 도입할 수 있도록 자율준수무역거래자제도를 두고 있다.¹⁾

본 연구는 한국 기업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도입이 실제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업 스스로 자율준수제도의 활용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국의 전략물자 자율준수제도의 최근 동향 그리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자율준수제도에 관한 현황분석과 이에 대한 실제 무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병행하였다. 이러한 현황과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제 I 장에서는 서론부분으로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고 제 II 장에서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제도의 도입 배경과 선행연구를 제시하였다. 제 III 장에서는 세계 주요국의 자율준수체제를 살펴보고 한국의 전략물자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제 IV 장에서는 현황 분석에 의해 자료를 중심으로 전략물자 자율준수제도의 무역에 대한 효과를 실증분석 하여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 V 장에서는 결론부분으로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II. 자율준수무역거래자제도의 도입 배경 및 선행연구

1. 도입 배경

1) 지정 배경

전략물자(strategic items)란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재래식 무기 및 이의 제조, 개발, 사용 등에 이용될 수 있는

1)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CP(Compliance Program, 자율준수프로그램)를 도입한 무역거래자를 의미하며, 이하 본 연구에서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를 “CP”로 나타내기로 한다.

물품 등으로 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및 기술을 포함한다. 이러한 전략물자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체제에 가입한 각 국가에 의해 **WMD** 확산국가와 테러조직에 이전되어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허가 등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제25조에 의해 자율준수체제(**Compliance Program**, 자율준수프로그램)를 갖추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무역거래자를 지정하고 있다.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란 전략물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능력,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자율관리조직의 구축 및 운용 능력 등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무역거래자를 심사를 통해 자율적인 전략물자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즉, 자율준수무역거래자란 자율준수체제를 갖추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무역거래자를 의미한다. 여기서 **CP**로 지정되면 수출허가를 받은 물품 등의 최종 사용자 및 최종용도에 관한 관리 업무 등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업무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등급에 따라 자율적인 관리 내용이 조금씩 상이하다.

2) 사후관리 및 특례

한국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의해 **CP** 지정 기업이 준수사항 등을 적절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자율준수체제가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운영현황 및 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감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보고는 자율준수체제 운영현황에 대한 운영보고와 허가건별 포괄허가수출실적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실적보고로 구분된다. 운영보고는 **CP**기업 스스로 전략물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능력,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자율관리조직의 구축 및 운용 능력에 대한 연간 현황을 익년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실적보고의 경우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략물자 수출허가 실적을 **A**와 **AA** 등급은 반기, **AAA**는 연간 주기로 보고하여야 한다.²⁾ **CP** 지정 기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경우 자율준수체제 운영원칙의 준수여부와 보고의무 사항 등에 대해 감사한다. 또한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CP**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CP**지정기업에게는 수출통제업무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진다. 주요 특례로는 심사면제, 서류면제, 허가면제, 허가처리기간 단축, 포괄허가 등이 있으며 등급별, 수출지역별로 적용 내용이 다르다.

2) 대외무역법 제25조 제3항,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82조 참조.

<표 1> 전략물자 CP 등급별 특례

지역 구분	특례	A	AA	AAA
'가' 지역	개별허가	심사면제	심사면제	심사면제
	최종사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개별허가 - 수출자의 최대주주 - 수출자의 해외 본점 - 수출자가 최대주주인 외국 현지법인 - 수출자의 해외 지점	허가면제 (7일내 보고)	허가면제 (7일내 보고)	허가면제 (연간보고)
	사용자포괄허가	가능(3년)	가능(3년)	가능(3년)
	품목포괄허가	-	가능(3년)	가능(3년)
	개별허가	-	-	서류면제
'나' 지역	최종사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개별허가 - 수출자의 최대주주 - 수출자의 해외 본점 - 수출자가 최대주주인 외국 현지법인 - 수출자의 해외 지점	서류면제	서류면제	심사면제
	개별허가 처리기간	15일	10일	5일
	사용자포괄허가	-	가능(2년)	가능(3년)
	품목포괄허가	-	-	가능(3년)
	동일 수출건(동일품목, 동일최종사용자)	서류면제	서류면제	서류면제
지역 공통	암호화품목 수출, 최종사용자의 최대주주가 한국법인인 민간기업이고, 최종사용용도가 내부시스템 혹은 민수용 제품의 개발·생산 용도일 때	허가면제 (7일내 보고)	허가면제 (7일내 보고)	허가면제 (연간보고)
	계약체결 없이 허가대상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	허가면제 (7일내 보고)	허가면제 (연간보고)

* 민감·초민감품목, 원자력 전용품목 및 군용물자품목은 개별허가의 특례 및 포괄허가신청자격의 적용 제외

* 자료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2. 선행연구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한 기존 연구는 다른 국가와의 제도적 비교를 통하여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효율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전략물자 자율준수제도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전략물자 자율준수제도와 수출통제제도의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현지(2008)는 한국 기업의 자율준수체제 구축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전략물자 관리업무에 대한 기업 내부 구성원의 인식 전환과 해외 자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신뢰할 수 있는 통제시스템에 대한 인센티브와 지원의 확대를 사례 연구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심상렬 외(2011)는 한국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전략물자 수출기업의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의 노력과 정부와 기업 간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및 한·일간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한국의 자율준수제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lwell(2003)은 미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타국에 비해 과도하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미국보다 통제가 약한 나라들로 대체하고자 하는 유인이 생겨 미국 산업계가 수출기회를 상실하는 효과가 있다는 가설에 의해 수출 감소에 따른 후생 손실에서 수출되지 못한 경제자원이 미국 내에서 이용되어 발생하는 후생 증가를 차감하여 미국 경제 전체적인 후생 변화를 추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전략물자 수출통제로 인하여 GDP의 0.0007% 내지 0.2%의 후생 손실을 입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Jones & Karreth(2010)은 첨단기술 제품(Advanced Technology Products, ATP)의 무역량을 고정효과모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일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도입이 첨단기술 제품의 수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수입에는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김소연(2012)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시행이 전략물자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수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특히 서방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가 효과가 증폭되어 소기의 정책효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테러지원국으로의 수출에 있어서는 영향이 없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앞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한국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제도 도입이 무역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수출허가금액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로 자율준수무역거래자 관련 품목별 수출과 수입금액을 조사하여 자율준수무역거래자제도 도입이 수출과 수입에 대한 영향을 2014년 자율준수무역거래자제도의 등급별 도입 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Ⅲ. 전략물자 자율준수제도의 현황

1. 주요국의 자율준수제도 현황

1) 미국의 자율준수프로그램(EMCP)

미국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자의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기업의 자율준수프로그램(EMCP : Export Management & Compliance Program) 도입을 산업계에서 수출자의 당연한 의무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은 국가안전보장의 최전선에서 거래상대방과 거래유형을 평가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자율준수프로그램의 구축을 통해 물품 및 기술이 우려국가나 테러단체 또는 우려거래자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가와 기업을 보호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전략물자 CP 제도는 기업의 신청에 의해 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등급 및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달리 미국의 경우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지정 및 등록절차가 없다. 다만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포괄수출허가(SCL : Special Comprehensive License)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구축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³⁾

2) 독일의 자율준수프로그램(ICP)

독일은 수출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물품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신뢰도 검증이 이루어진다. 신뢰도 검증은 ‘전쟁무기 및 관련품목의 수출업체 신뢰성 검증을 위한 독일정부 원칙서’⁴⁾에 따라 수출통제 절차를 적절히 수립하고 수행하는지, 허가요건, 문서관리 등 관련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검증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자율준수프로그램(ICP : Internal Compliance Programmes)의 수립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국제수출허가(SAG : Sammelgenehmigung)는 다양한 품목을 여러 국가의 수탁인에게 수출할 수 있는 허가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의 포괄허가와 유사한 개념이다. 국제수출허가는 일반허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므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고 신용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부여한다. 국제수출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3) EAR §752.5(C)(3)ICP. You must provide a copy of your proposed ICP as required by §752.11 of this part...

4) Federal Office of Economics and Export Control(BAFA), “Principles of the Federal Government for evaluating the reliability of exporters of war weapons and arms-related goods”, 2001. 7. 25.

서는 기업 내 최고책임자가 자율준수프로그램 구축을 증명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독일 연방경제수출통제청(BAFA)으로부터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장 감사를 받아야한다. 또한 독일은 수출허가의 전제조건으로 자율준수프로그램 이행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자율준수프로그램 구축을 모든 전략물자 수출자에게 이행토록 하고 있다.

3) 일본의 자율준수프로그램

일본은 1987년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에 근거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외환법에 근거한 수출자등에 대한 준수기준을 정하는 성령⁵⁾에 따라 수출자를 일반 수출자, 전략물자 수출자로 구분하고 각 수출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모든 수출자에게는 판정책임자의 지정과 최신 수출관리규정에 대한 정보 공유가 법률상 의무로 부과되며, 전략물자 수출자의 경우에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요건의 대부분을 갖추는 것이 법률상 의무로 부과되어 있다.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기업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수출관리 내부규정, 수출관리 내부규정 총괄표, 자가 체크리스트를 경제산업성에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된 기업은 포괄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기업의 신청에 의해 심사를 거쳐 자율준수프로그램 등록여부를 결정하며, 2013년 자율준수프로그램 제출건수는 1,450건이다.

<표 2> 일본의 자율준수프로그램 등록 기업 수

(단위 : 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ICP 제출	1,447	1,467	1,430	1,445	1,463	1,450
신규 신청	88	74	65	55	48	28
반려	30	54	102	40	30	41

*자료 : 전략물자관리원

일본의 경우 모든 수출업자는 판정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고, 전략물자 수출업자에게도 자율준수프로그램 요건의 대부분을 갖추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전략물자 수출자의 자율준수프로그램 구축이 의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수출자등준수기준을 정하는 성령(輸出者等遵守基準を定める省令) 제1조.

4) 싱가포르의 자율준수프로그램(ICP)

싱가포르의 수출통제체제는 전략물자관리법(SGCA)과 전략물자관리규정(SGCR)에 근거하고 있으며, 업계의 효과적인 자율준수프로그램(ICP : Internal Compliance Programme) 이행을 장려하고 준수기업에게 허가 절차를 간소화 해주기 위하여 2007년 6월 18일부터 전략물자무역체계(STS : Strategic Trade Scheme)를 시행하고 있다.⁶⁾ STS 하에서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도입 수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허가 종류가 1급, 2급, 3급으로 달리 적용되는데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한 기업은 2급과 3급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지난 2014년 4월 1일 싱가포르는 STS 체계를 개정하면서 기존 1급~3급으로 구분되었던 허가체계를 포괄허가와 개별허가로 재정비하였다. ICP의 7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포괄허가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TradeFIRST 평가에서 Enhanced 등급 이상 획득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표 3> 싱가포르의 ICP 유형

유형	승인 범위	자격기준
포괄 허가	- 목적지 국가에 대한 승인 - 사전승인된 여러 품목을 다수의 목적지 국가로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P 요건 ▪ TradeFIRST 평가 Enhanced 등급 획득 ▪ 무역거래자로 등록 ▪ 법규준수 기록
	- 특정 사용자에게 대한 승인 - 사전승인된 여러 품목을 다수의 최종사용자에게 수출	
개별 허가	- 수출건당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거래자로 등록

*자료 : 전략물자관리원

한편 우리나라는 허가 신청전에 미리 신청기업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도입 수준을 심사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것과 달리 싱가포르는 허가신청의 요건으로서 자율준수프로그램 구축 수준을 심사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즉 우리나라와 같이 자율준수체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심사를 통해 CP 기업으로 지정해주는 방식이 아닌 포괄허가 신청을 위한 증빙자료로서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출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6) Singapore Customs, *STRATEGIC TRADE SCHEME Handbook*, 2014. 4(<http://www.customs.gov.sg>).

2. 한국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제도 현황

1) 지정 현황

한국의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는 2004년도 전략물자·기술수출입 통합공고에 자율준수체제의 정의, 자율수출관리규정의 내용,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및 감사와 지정철회 등을 규율함으로써 도입되었다. 그러나 2006년까지 CP 지정 업체수는 7개사로 지정 실적이 미미한 수준에 그침에 따라 이를 입법화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정·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2007년도에 대외무역법을 일부개정하면서 CP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와 함께 CP 도입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활발히 진행하면서 2007년 이후 매년 평균 30여개 사가 지정되는 실적을 보였다.

<표 4>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현황

(단위 : 업체 수)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4	7	31	64	98	130	150	162	213	77	151

*자료 :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한편, CP제도는 그동안 동일한 지정요건을 모든 기업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기업의 수출관리 수준과 기업의 규모 및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지는 기업의 무역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2014년 1월 대외무역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정 범위를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 확대하고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을 통해 선택형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에 의한 등급제가 도입되었다. 이는 지정 요건의 수준에 따라 A, AA, AAA 등급으로 구분하고, 기업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심사기준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결과 CP기업의 수는 2013년 말 213개사에서 2015년 말 151개로 감소하였다. CP기업의 감소현상은 제도 확산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는 엄격한 심사와 관리로 자율준수 체계가 전반적으로 내실화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등급별 현황

<표 5> 등급별 자율준수무역거래자 현황

(단위 : 사, 건, 백만USD)

구 분		2014년				2015년				
지정기업	지정현황	대기업	5	14	7	26	11	25	7	43
		중소기업	7	39	5	51	31	71	5	107
		연구소등	-	-	-	-	-	1	-	1
		합계	12	53	12	77	42	97	12	151
	업종별	제조업	10	44	9	63	30	75	9	114
		도·소매업	2	9	3	14	9	18	3	30
		물류·운수업	-	-	-	-	3	3	0	6
	연구소등	-	-	-	-	-	1	-	1	
사전판정	건수	해당	83	205	107	395	30	250	54	334
		비해당	71	483	795	1,349	541	855	562	1,958
		계	154	688	902	1,744	571	1,105	616	2,292
수출허가	건수	개별	38	1,355	629	2,022	259	1,621	626	2,506
		포괄	10	230	146	386	14	246	162	422
		합계	48	1,585	775	2,408	273	1,867	788	2,928
	금액	개별	40.7	1,452.3	546.9	2,039.9	103.4	624	440.4	1,167.8
		포괄	62.2	16,718.5	2,472.8	19,253.5	17	473,656.7	3,065.2	476,738.9
		합계	102.9	18,170.8	3,019.7	21,293.4	474,280.7	474,280.7	3,505.6	477,906.7

*자료 : 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 연례보고서, 2015년, 2016년 참조.

2014년 CP 등급제 도입을 통해 지정 요건의 수준에 따라 A, AA, AAA 등급으로 구분하고, 기업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심사기준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기업은 자사의 자율준수체제 구축 수준과 규모 및 업종을 고려하여 등급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CP 지정의 기회가 확대되었다. 또한 CP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기업에서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 확대하면서, 전략기술의 무형이전에 대한 허가의무를 주로 이행하게 될 대학 및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전략기술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2014년 등급별 지정제도 도입 이후 지정기업을 살펴보면 등급별로는 AA 등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서비스업 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수출허가의 내용을 보면 개별허가 건수가 포괄허가 건수보다, 월등히 더

많지만 허가 금액을 보면 개별허가 금액보다 포괄 허가 금액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5> 참조).

3) 수출허가 현황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기업의 년도별 수출허가를 건수와 금액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 CP기업의 수출허가 건수는 280건에서 2013년 686건으로 매년 증가하였지만 2014년 선택형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에 의한 등급제가 도입된 후 CP기업의 수출허가 건수가 감소하여 2013년 686건에서 2014년 487건으로 2016년에는 296건으로 감소하였다. CP기업의 수출허가 금액 또한 등급제가 도입된 2014년에는 급격히 감소하다 2015년에는 증가하였다(<표 6> 참조).

<표 6>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품목별 수출허가 현황

(단위 : 개, 사, 백만USD)

구분 년도	허가 품목 수	수출허가 CP기업 수	품목별 수출허가 금액	품목별 총 수출 금액	품목별 총 수입 금액
2010	195	280	2,807.06	28,900.86	36,877.83
2011	270	368	9,345.13	72,808.20	55,265.64
2012	269	581	71,267.07	57,947.93	57,751.14
2013	330	686	166,516.53	65,879.29	66,022.10
2014	314	487	21,296.23	63,118.12	66,006.87
2015	199	385	473,955.17	53,303.19	53,208.95
2016	141	296	21,828.50	48,076.63	49,005.10
합계	1,718	3,083	767,015.69	390,034.22	384,137.63

* 허가품목 : HSK10단위

* 자료 : 전략물자관리원

IV. 전략물자 자율준수제도의 무역에 대한 효과 분석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한국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제도 도입이 수출과 수입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수출허가금액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 관련 품목별 총 수출과 수입금액을 조사하여 자율준수무역거래자제도 도입이 수출과 수입에 미친 영향을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의 등급별 도입 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수출을 집계하기 위한 대리변수(proxyvariable)로는 CP기업의 HSK 10단위 품목별 수출허가금액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략물자관리원의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7년간의 수출허가 실적 데이터에서 추출한 HSK 10단위 품목을 사용하였다.

2. 연구방법 및 모형

본 연구를 위한 분석방법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품목별 수출허가 금액이 CP기업의 품목별 총 수출과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품목별(HSK 10단위) 수출허가 통계자료인 횡단면 시계열자료(cross time series data)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CP기업의 품목별 수출허가금액(CPEX)을 중심으로 허가 품목별 전체의 수출액(CPGEX)과 수입액(CPGIM)을 종속변수로 보았다. 이는 CP기업의 수출허가 증가는 관련된 품목별 총 수출과 수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로는 CP기업의 수출허가 금액을 다원 1차방정식에 근거하여 일반최소사승분법(ordinary least squares method : OLS)을 이용하여 회귀식을 도출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였다.

$$\text{CPGEX (CPGIM)} = \alpha_0 + \alpha_1 \text{CPEX} + \varepsilon_t$$

(예상 : $\alpha_1 > 0$)

여기에서 CPGEX (CPGIM) : CP기업 수출허가 관련 품목별 총 수출액(총 수입액)
CPEX : CP기업의 품목별 수출허가 금액

ε_t : t시점에서의 오차

α_i : 해당변수의 회귀계수 ($i = 1 \dots\dots n$)

위의 모형에서 회귀계수(Parameter Estimate) α_1 는 CP기업의 수출과 관련된 변수의 탄력성 크기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회귀계수 α_1 은 CP기업의 품목별 수출허가금액이 관련품목별 총수출에 미치는 정도를 표시하는 것이다. CP기업의 수출 증가는 국내의 관련된 품목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계수는 정(+)¹⁾의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3. 실증분석 결과

1) 분석 기간 총 수출입에 미친 효과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제도 도입이 수출과 수입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수출허가금액(CPEX)을 설명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품목별 총 수출액(CPGEX)과 수입액(CPGIM)의 관계를 회귀분석 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모형이 추정되었다.

<표 7> CP기업의 수출이 품목별 총 수출입에 미친 효과 분석

분류	회귀계수(β)	t값	R ²	수정된 R ²	Durbin-Watson
품목별 총 수출금액	.165	5.186**	.027	.027	1.873
품목별 총 수입금액	.197	8.112**	.039	.038	1.987

주 : 1. ***는 1%수준의 유의성, **는 5%수준에서 유의성 정도를 각각 나타냄

2. 분석기간 :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품목별(HSK 10단위) 1,718개 자료.

한국의 2010년부터 2016년까지 CP기업의 품목별(HSK10단위) 1,718개 수출허가금액 자료에 의해 회귀분석 한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CP기업의 수출허가금액과 관련 품목별 총 수출과의 회귀계수는 0.165로 두 변수의 상관관계는 양(+)²⁾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CP기업의 수출허가금액은 관련 품목별 총 수출에 매우 유의한(p=0.000)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검정하는 t값 5.186의 확률적 표시인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alpha=0.01$ 에서 이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CP기업의 수출허가금액이 증가하면 회귀계수 β 에 대한 95% 신뢰구간에 대하여 품목별 총 수출은 약 17%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회귀모형의 유효성을 나타내는 결정계수인 R₂(coefficient of multiple determination)의 값을 볼 때 CP기업의 수출허가금액 중에서 약 2% 정도만이

관련 품목별 총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CP기업의 수출허가 증가는 품목별 총 수출 증가에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CP기업의 수출허가금액과 관련 품목별 총 수입과의 상관계수는 0.197로 상관관계는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함(p=0.000)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검정하는 t값 8.112의 확률적 표시인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alpha=0.01$ 에서 이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CP기업의 수출허가금액이 증가하면 회귀계수 B에 대한 95% 신뢰구간에 대하여 품목별 총 수입은 20%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회귀모형의 유효성을 나타내는 결정계수인 R²의 값을 볼 때 CP기업의 수출허가금액 중에서 약 3%만이 관련 품목별 총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CP기업의 수출허가 증가는 품목별 총 수입 증가에는 총 수출증가 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귀모형에서 오차항에 일차의 자기상관을 검정하는 더빈-왓슨 통계량(Durbin-Watson statistic)은 수출의 경우 1.873의 값을 보이며, 수입의 경우 1.987의 값을 보여 독립변수들의 자기상관에도 문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등급제 도입 후 총 수출입에 미친 효과

<표 8> 등급제 도입 후 품목별 총 수출입에 미친 효과 분석

분류	회귀계수(β)	t값	R ²	수정된 R ²	Durbin-Watson
품목별 총 수출금액	.399	11.094**	.159	.158	1.857
품목별 총 수입금액	.363	9.930**	.132	.130	2.009

주 : 1. ***는 1%수준의 유의성, **는 5%수준에서 유의성 정도를 각각 나타냄
 2. 분석기간 :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품목별(HSK 10단위) 652개 자료.

한국은 2014년 선택형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에 의한 등급제를 도입하였다. 그 후 2014~2016년 동안 CP기업의 품목별(HSK10단위) 652개 수출허가 금액 자료에 의해 회귀분석 한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CP기업의 수출허가금액과 한국의 관련 품목별 총 수출과의 회귀계수는 0.399로 두 변수의 상관관계는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p=0.000)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검정하는 t값 11.094의 확률적 표시인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alpha=0.01$ 에서 이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CP기업의 수출허가금액이 한 단위 증가하면 회귀계수 β 에 대한 95% 신뢰구간에 대하여 품목별 총 수출은 40%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회귀모형의 유효성을 나타내는 결정계수인 R_2 (coefficient of multiple determination)의 값을 볼 때 CP기업의 수출허가금액 중에서 약 16% 정도 관련 품목별 총 수출에 영향을 주었음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택형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에 의한 등급제를 도입 이후 CP기업의 수출허가 증가는 도입 이전보다 품목별 총 수출 증가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CP기업의 수출허가금액과 한국의 관련 품목별 총 수입과의 회귀계수는 0.363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p=0.000$)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검정하는 t값 9.930의 확률적 표시인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alpha=0.01$ 에서 이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CP기업의 수출허가금액이 한 단위 증가하게 되면 회귀계수 β 에 대한 95% 신뢰구간에 대하여 품목별 총 수입은 36%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회귀모형의 유효성을 나타내는 결정계수인 R_2 의 값을 볼 때 CP기업의 수출허가금액 중에서 약 13% 만이 관련 품목별 총 수입에 영향을 주었음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택형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에 의한 등급제를 도입 이후 CP기업의 수출허가 증가는 품목별 총 수입 증가에는 총 수출증가보다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더빈-왓슨 통계량(Durbin-Watson statistic)은 수출의 경우 1.857의 값을 보이며, 수입의 경우 2.009의 값을 보여 독립변수들의 자기상관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제도 도입이 수출과 수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는바, 그 실증분석 결과에 의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2010~2016년 동안 CP기업의 품목별(HSK10단위) 1,718개 수출허가 자료에 의한 회귀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CP기업의 품목별 수출허가금액과 한국의 관련 품목별 총 수출과의 회귀계수는 0.165로 두 변수의 상관관계는

양(+)²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함($p=0.000$)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CP기업의 수출허가금액과 한국의 관련 품목별 총 수입과의 상관계수는 0.197로 상관관계는 양(+)²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함($p=0.000$)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CP기업의 수출허가 증가는 품목별 총 수출보다 총 수입 증가에 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2014년 한국은 선택형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에 의한 등급제를 도입하였다. 그 후 2014~2016년 동안 CP기업의 품목별(HSK10단위) 652개 수출허가 자료에 의해 회귀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CP기업의 수출허가금액과 한국의 관련 품목별 총 수출과의 회귀계수는 0.399로 두 변수의 상관관계는 양(+)²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함($p=0.000$)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택형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에 의한 등급제를 도입 이후 CP기업의 수출허가 증가는 도입 이전보다 품목별 총 수출 증가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CP기업의 수출허가금액과 한국의 관련 품목별 총 수입과의 회귀계수는 0.363으로 양(+)²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함($p=0.000$)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택형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에 의한 등급제를 도입 이후 CP기업의 수출허가 증가는 품목별 총 수입보다 총 수출증가에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증 분석 결과는 한국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제도가 수출 및 수입에 정(+)²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그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므로 효율성 측면에서 더 많은 정책적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V. 결 론

한국은 세계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관련 국제조약 및 국제체제에 모두 가입하고 국내법령, 제도와 조직을 정비하는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 이행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기업측면에서 전략물자의 수출관리가 필요한 것은 국가안보유지와 국제테러 방지 기여와 수출관리의 소홀 또는 부주의로 인한 위법수출에 따른 법적 제재와 기업이미지 손상 등 막대한 피해 및 첨단기술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제도 도입이 수출과 수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분석결

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2010년부터 2016년 동안 CP기업의 품목별(HSK10단위) 수출허가 자료에 의해 회귀분석한 결과 CP기업의 수출허가 증가는 품목별 총 수입 증가에는 총 수출증가 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2014년 선택형 자율준수무역거래자제도에 의한 등급제 도입 이후 CP기업의 수출허가 증가는 도입 이전보다 품목별 총 수출 증가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또한 CP기업의 수출허가 증가는 품목별 총 수입 증가에는 총 수출 증가보다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실증 분석 결과는 한국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제도가 수출 및 수입에 정(+)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리스크 관리 측면 뿐만 아니라 경쟁력 제고로 인식하고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을 통하여 수출관리체계를 기업 스스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실제 기업의 전략물자 자율준수제도 도입을 통하여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확대할 경우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해 효율성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특혜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소연,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경제 효과 분석”,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6.
- 김현지, “전략물자의 국제수출통제와 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자율준수체제를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제10권 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8. 3.
- 김현지 · 신아름 · 채수홍, “한국의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와 유사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무역학회지 제41권 4호, 한국무역학회, 2016. 8.
- 심상렬 · 주이화,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CP)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3권 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1. 12.
- 오현석 · 양정화,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42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9. 6.
- 이경영 · 이승택, “전략물자 무역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72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6. 12.
-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24호.
- 산업통상자원부 · 전략물자관리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제 가이드스”, 2013. _____, “CP기업의 HSK 코드별 허가금액”, 각 년도.
- 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 연례보고서”, 각 년도. _____, 수출통제의 이해, 박영사, 2015.
- 日本 安全保障貿易情報センター、モデルCPガイドス、2013. 6.
-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Corporate Trade Practices Compliance Programs*, 2006.
- Craig Elwell, Jeanne Grimmer, Rober D. Shuey and Ian F. Fergusson, *Export Administration Act of 1979 Reauthorization*, CRS Report for Congress, Order Code RL30169, 2003. 1.
- Federal Office of Economics and Export Control BAFA, *Internal Compliance Programmes-ICP*, 2012. 6.
- Scott Jones and Johannes Karreth, *Assessing the Economic Impact of Adopting Strategic Trade Controls*, Department of State Task Order S-AQMMA-08-F-6920, The University of Georgia Center for International Trade and Security, 2010 12.
- Singapore Customs Media Release, *Singapore Customs Transforms Trade Facilitation*

Approach With New Client Engagement Framework : Trade FIRST, Singapore Customs · Kastam Singapura, 2011. 1.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Compliance Guidelines: How to develop an effective export management and compliance program manual*, 2010. 2.

Wassenaar Arrangement, *Best Practice Guidelines on Internal Compliance Programs for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Agreed at the 2011 Plenary)*, 2011.

K-stat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한국무역협회.

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the Impact of Compliance Program on Trade

Hyun-Jee KIM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the Compliance Program in Korea on real trade and its implication by empirical analysis.

First, through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 data of the amount of permitted export by CP items (HSK10 units) during the period of 2010-2016 in Korea, it is revealed that the increase in export license of CP enterprises has a relatively greater effect on the increase in total imports by item.

Secon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rating system under the optional CP in 2014, the increase in export licenses of CP companies has had a greater impact on the total export growth by items than before. Also, it is analyzed that the increase of export permission of CP companies has a relatively less effect on the increase of total imports by item than that of total exports. The results of this empirical analysis show that CP has a positive effect on exports and imports, but it needs to be supplemented in terms of efficiency.

Keywords : Strategic Item, Compliance Program, Export License, Self-Compliance Traders